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66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12호	문정복의원	2024.7.1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 차 교육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3332호	진선미의원	2024.8.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4.9.24.)
	제4091호	서영교의원	2024.9.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4.9.24.)
	제4812호	강경숙의원	2024.10.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0차 교육위원회(2024.11.6.) 상정
	제4891호	조정훈의원	2024.10.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0차 교육위원회(2024.11.6.) 상정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0.29.)에서 문정복의원, 진선미의원, 서영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는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대안을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함.
- 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안건조정위원회(2024.1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함.
- 마.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24.11.6.)는 안건조정 위원회의 조정안과 강경숙의원, 조정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

하고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	제2조(유효기간)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u>20</u>	<u>20</u>		
<u>24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u>27년</u>		
가진다.			